

「외국인증권투자 외화예금 약관」

제1조 (예금계좌 개설)

- ① 이 예금은 예금주의 자필서명에 의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 예금주가 상임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상임대리인의 개설신청에 의하여 이 예금을 개설할 수 있으며, 상임 대리인에 의한 이 예금의 입·출금 및 계좌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예금주가 부담합니다.

제2조 (지급)

예금주 또는 상임대리인이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은행과 체결한 자금 이체 협약에서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제3조 (이자)

이 예금의 이자는 당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외화보통예금이율로 셈합니다.

제4조 (적용환율)

이 예금을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.

제5조 (양도 및 질권설정)

이 예금은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

2017.8.18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-약관-0109호